

1. 개정 이유

해양시설 자체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의 기재사항을 구체화하여 점검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관련 법률의 개정사항 및 국제기준을 반영하는 한편, 형식승인표 등 현행 서식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2조)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의 개정으로 잔류성오염물질의 범위가 법률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함.

나. 기술전문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안 제72조의3제3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술전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을 고려하도록 함.

다. 해양시설 자체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기재사항 구체화(안 별표 9의2)

- 자체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 점검자(성명, 보유자격 등)를 기재하도록 함.
- 안전점검 항목별 결과가 명확히 기록될 수 있도록 세부 점검 결과를 기재하도록 하고,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함.

라. 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표 정비(안 별표 24)

- 기기를 기준으로 작성된 형식승인표를 현행 형식승인 대상인 방제 자재·약제에 맞게 정비하고, 제품의 포장 형태 등을 고려하여 표시 방법과 규격을 개선함.

마. 오염물질수거확인증 서식 정비(안 별지 제39호서식)

- 국제해사기구(IMO)의 관련 지침에 따른 오염물질 분류체계와 표준 서식을 반영하여 오염물질수거확인증 서식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72조의3제3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고려해야 한다”로 한다.

별표 9의2 제3호가목 중 “제20조의2제3항”을 “제20조의3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중 “소유자”를 “소유자, 점검자(성명, 보유 자격 등)”로
하며, 같은 목 3)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 항목별 세부 점검 결과

별표 24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작회사:	자재·약제 품명:
형식 및 규격:	형식승인일:
형식승인번호:	수입신고일: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임을 증명합니다.	

별표 24 비고 제1호 중 “표지의 재질은 알미늄판 등으로”를 “표기는 제
품 포장재 우측 상단에”로, “40mm”를 “30mm”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발급번호(ISSUED NUMBER)		오염물질수거확인증 (DISPOSAL CERTIFICATE OF THE WASTE MATERIAL)			
제 호 No.					
선명/해양시설명 (NAME OF VESSEL/FACILITY)		성명(NAME)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총톤수 (GROSS TONNAGE)		선적항 또는 소재지 (LOCATION)			
선종 (TYPE OF SHIP) ☐ 유조선 (Oil tanker) ☐ 여객선 (Passenger ship)		☐ 케미컬운반선 (Chemical tanker) ☐ 기타 화물선 (Other cargo ship)		☐ 벌크선 (Bulk carrier) ☐ 컨테이너선 (Container) ☐ 로로선 (Ro-ro) ☐ 기타선 (Other)	
주소 (ADDRESS)		(TEL:)			
기 림 (MARPOL Annex I -Oil)		수거량 m ³ (QUANTITY)		폐기물 (MARPOL Annex V-Garbage)	
선저폐수 Oily bilge water				A. 플라스틱류(Plastics)	
유성찌꺼기(슬러지) Oily residues(sludge)				B. 음식물류 폐기물(Food wastes)	
세정수 Oily tank washings				C. 생활폐기물(Domestic wastes (e.g., paper products, glass, metal, bottles, crockery, etc))	
세정수 스케일·슬러지 Scale/sludge from tank cleaning				D. 식용유(Cooking oil)	
기타 Other(please specify)				E. 소각재(Incinerator ashes)	
유해액체물질 세정수 (MARPOL Annex II-NLS) tank washings		수거량 m ³ /물질명 (QUANTITY/NAME)		F. 운항상쓰레기(Operational wastes)	
X류(Category X substance)				G. 동물사체(Animal carcass(es))	
Y류(Category Y substance)				H. 어구(Fishing gear)	
Z류(Category Z substance)				I. 전자폐기물(Electronic Waste)	
기타(OS-other substance)				J. 해양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화물잔류물 (Cargo residues(non-HME))	
				K. 해양환경에 유해한 화물잔류물 (Cargo residues(HME))	
				대기환경 관련 폐기물 (MARPOL Annex VI-related) 수거량 m ³ (QUANTITY)	
				배기가스 정화장치 세정 잔류물 Exhaust gas-cleaning residues	
참여자(선박·시설) (ATTENDANT)	직책 (RANK)			수거자 (DISPOSER)	수거선명 (VESSEL)
	성명 (NAME)				성명 (NAME)
수거일자(DISPOSAL DATE)					
「해양환경관리법」 제7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상기 오염물질을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waste material has been disposed of in accordance with Article 72(2) of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nd Article 39(1) of its Enforcement Regul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성명 [인]					

210mm × 297mm(신문용지 54g/m²)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잔류성오염물질)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물질을 말한다.	제2조(잔류성오염물질) ----- ----- -----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 제1호의 잔류성오염물질----.
제72조의3(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략)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u>구성한다</u> .	제72조의3(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u> .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